

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제 25 - 143 호
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.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·직업재활·교육·체육·문화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「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」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(기부채납), 제20조(사용허가), 제21조(사용허가기간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및 제81조(비용보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(운영의 위탁 등)
- 「마포구 상암동 ‘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’ 건립·운영 실시협약」 (마포구↔재단법인 푸르메, 2014. 1. 29.)

2) 필요성

-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효율성 제고
- 다양한 복지 수요에 신속·유연하게 대처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

다.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: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

- 1)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2)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관리 일체
- 3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소재지: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(상암동 1738)(☎02-6070-9000)
- 2) 시설규모: 지하 3층/지상7층, 연면적 $18,571.72m^2$
- 3) 위탁대상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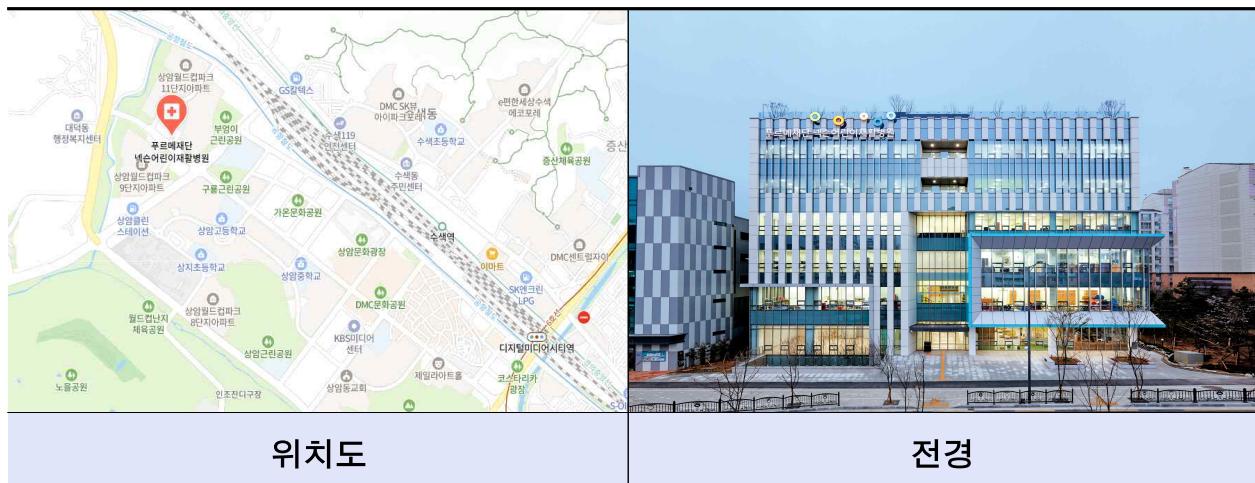
시설유형	시설명	전용면적(m^2)	운영인력
장애인의료재활시설	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	6,557.05	196명
장애인직업재활시설	마포푸르메장애인직업재활센터	433.37	5명
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	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	1,445.92	18명
도서관	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	391.86	2명

* 공용 면적(주차장, 기계실, 회장실, 복도 등): $9,743.52m^2$

4) 층별현황

층별	용도	면적(m^2)	비고
계		18,571.72	
7층	식당, 옥상정원	719.47	
6층	낮병동(150병상), 놀이터	1,626.93	
5층	입원병동(38병상), 놀이터	1,626.93	
4층	치료실 등	1,463.17	
3층	체육관, 다목적실 등	1,750.78	체육시설 등
2층	재활치료실 등	1,745.10	
1층	어린이도서관, 검사실, 일반진료, 카페 등	1,475.96	어린이도서관 등
지하1층	체육시설(수영장), 문화교실, 사무실 등	2,655.79	체육시설 등
지하2층	직업재활센터, 보조기기실, 주차장	2,772.75	직업재활시설 등
지하3층	주차장, 방제센터, 기계실	2,734.84	

5) 위치도 및 전경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5.12.30.~2030.12.29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유재산법에 따른 수의계약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(사용허가기간)에 의거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으로, 재단법인 푸르메에 최장 20년 무상 사용 허가함

※ 2015. 12. 30.~2035. 12. 29.(20년) 위탁계약은 무상사용·허가기간 범위내에서 자동 연장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5년 기준)

1) 소요예산: 2,538,176천원(시비 2,037,036천원, 구비 501,140천원)

2)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시설명	예산액	지원내용	비고
계	2,538,176		
푸르메재단 네슨어린이재활병원	1,739,392	- 인건비: 246,113 - 운영비: 1,493,279	시비 83% 구비 17%
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	410,826	- 인건비: 290,532 - 운영비 및 사업비: 120,294	시비 93% 구비 7%
마포푸르메장애인직업재활센터	256,018	- 인건비: 236,284 - 운영비: 19,734	시비재배정 구비 50,000
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	131,940	- 인건비: 84,608 - 운영비 및 사업비: 47,332	구비 100%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
- 2) 이 시설의 건물을 기부채납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관리의 권한·권리를 부여한 협약의 연속성과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

※ 마포구 상암동 ‘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’ 건립·운영 실시협약, 마포구-재단법인 푸르메, 2024.1.29.

- 3)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기타 민간위탁 심사에 필요한 사항

- 1) 수탁자 성과평가 실시 완료: 2025. 9. 29.(월), ‘우수’
- 2) 수탁자와 위·수탁 협약서 검토 후 재계약 체결: 2025. 12월 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장애인복지법]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81조(비용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]

제7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4. 20.>

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4. 1. 7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4. 1. 7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[사회복지사업법]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, 2023.12.28.>

[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